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연구소 용지 -

용 지 공 급 지 침 서

2019. 2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성장산업유치과

————— <유 의 사 항> —————

1.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산업시설용지는 입주 신청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계획 심의에 의하여 공급하는 부지로서 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므로 입주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심의의 기초자료이므로 각 평가 항목이 누락되거나 부실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회 공급대상 토지는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준공일(사용 승인일)까지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제공이 불가하오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조성 개요	1
1.1 사업목표	1
1.2 사업현황	1
1.3 지구별 위치도	2
1.4 토지이용계획	2
2. 공급대상용지 관련사항	4
2.1 위치도	4
2.2 용지현황	5
2.3 건축물계획 관련사항	6
2.4 유치대상 업종	7
3. 용지공급 절차와 조건	9
3.1 용어의 정리	9
3.2 일반사항	9
3.3 공급일정	10
3.4 공급조건	11
3.5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11
3.6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14
4.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8
4.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8
4.2 사업계획서 제출	19
4.3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세부지침	20

[별첨 1] 세부평가기준

[별첨 2]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

[별첨 3] 서약서

[별첨 4] 기업현황 요약서

[별첨 5] 사업계획서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연구소 용지 -

용지공급지침서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연구소 유치를 위한 용지 공급에 있어 용지 공급 대상, 공급 신청방법, 공급절차, 공급조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고자 함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조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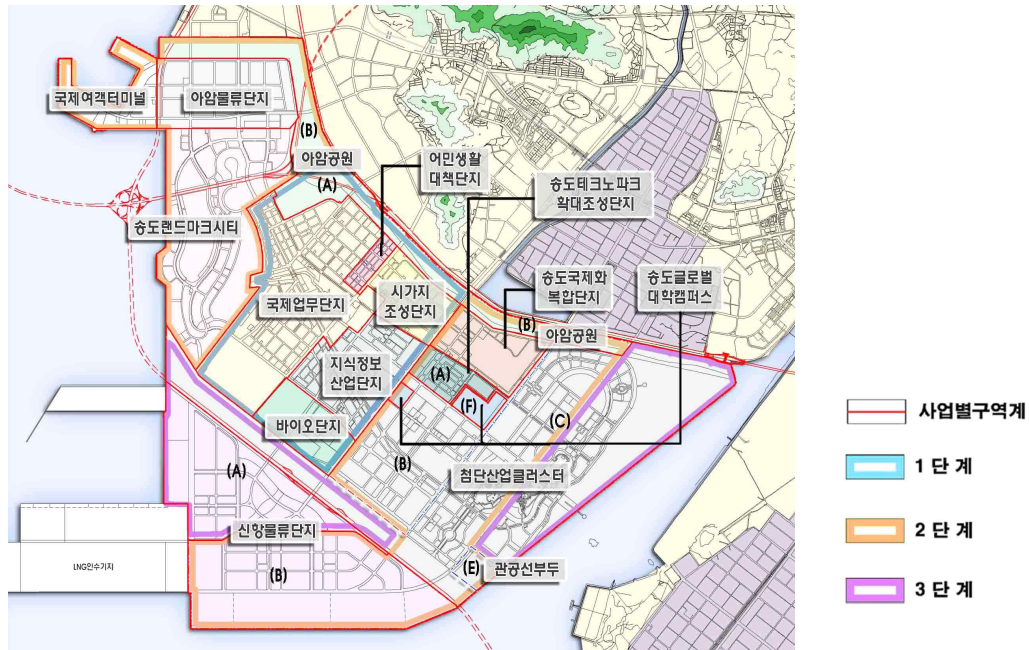
1.1 사업목표

- ▶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의 거점지
- ▶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단지
- ▶ 산업과 학술, R&D가 연계되는 클러스터 조성
- ▶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등을 포함하는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
- ▶ 동북아 물류의 거점지

1.2 사업현황

- 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2)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3) 면 적: 53.36 km²
- 4) 목표연도: 2020년
- 5) 계획인구: 265,611명
- 6)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1.3 지구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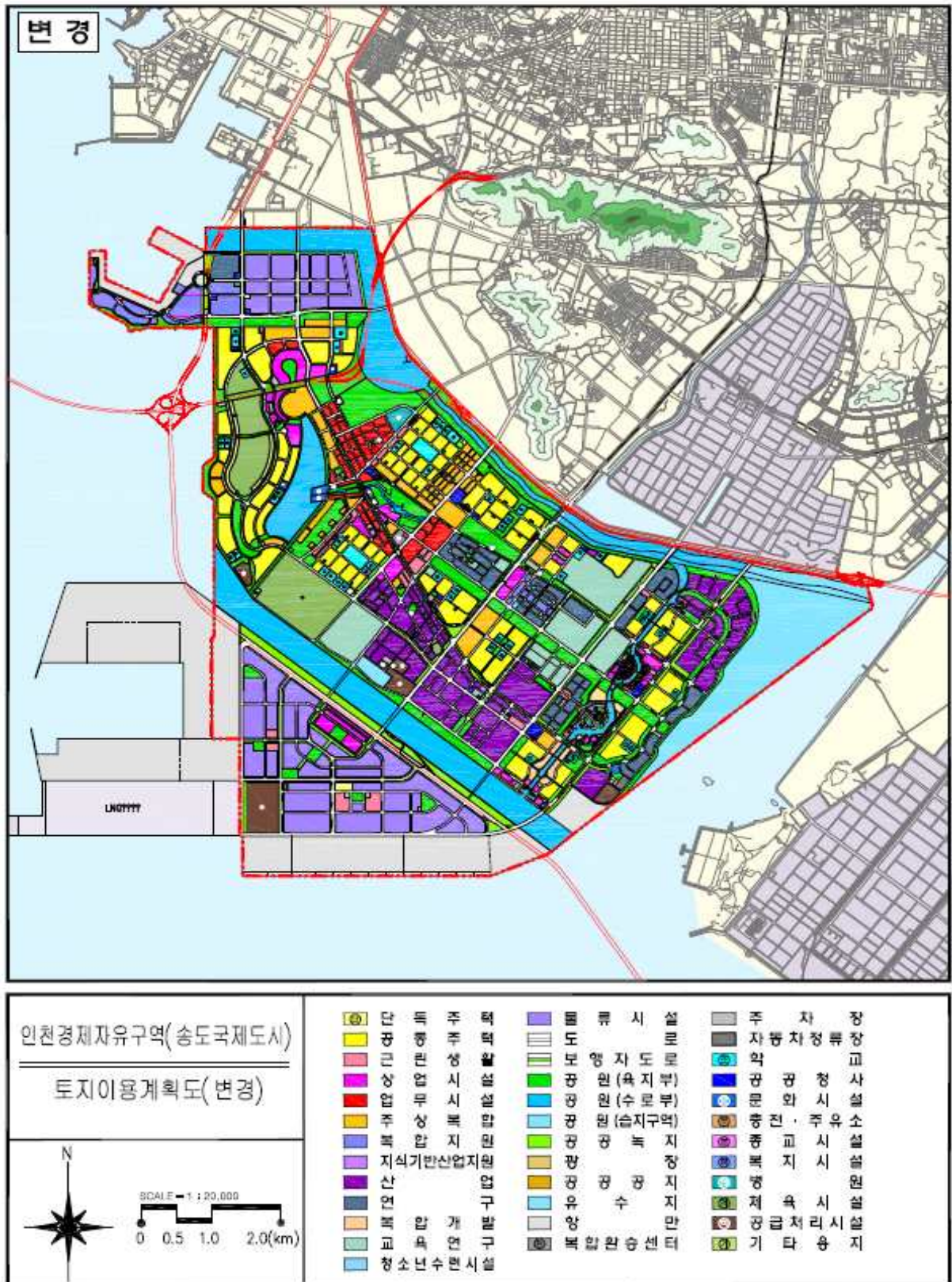


1.4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 (2018. 8월)

구 분	면 적 (㎡)	구성비 (%)
합 계	53,362,398.4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447,987.8	8.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471,846.3	0.9
상 업 시 설 용 지	3,245,765.7	6.1
업 무 시 설 용 지	821,551.6	1.6
산 업 시 설 용 지	2,927,516.8	5.5
연 구 시 설 용 지	3,151,946.1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83,399.0	8.0
관 광 위 락 시 설 용 지	954,034.0	1.8
공 공 시 설 용 지	32,938,751.1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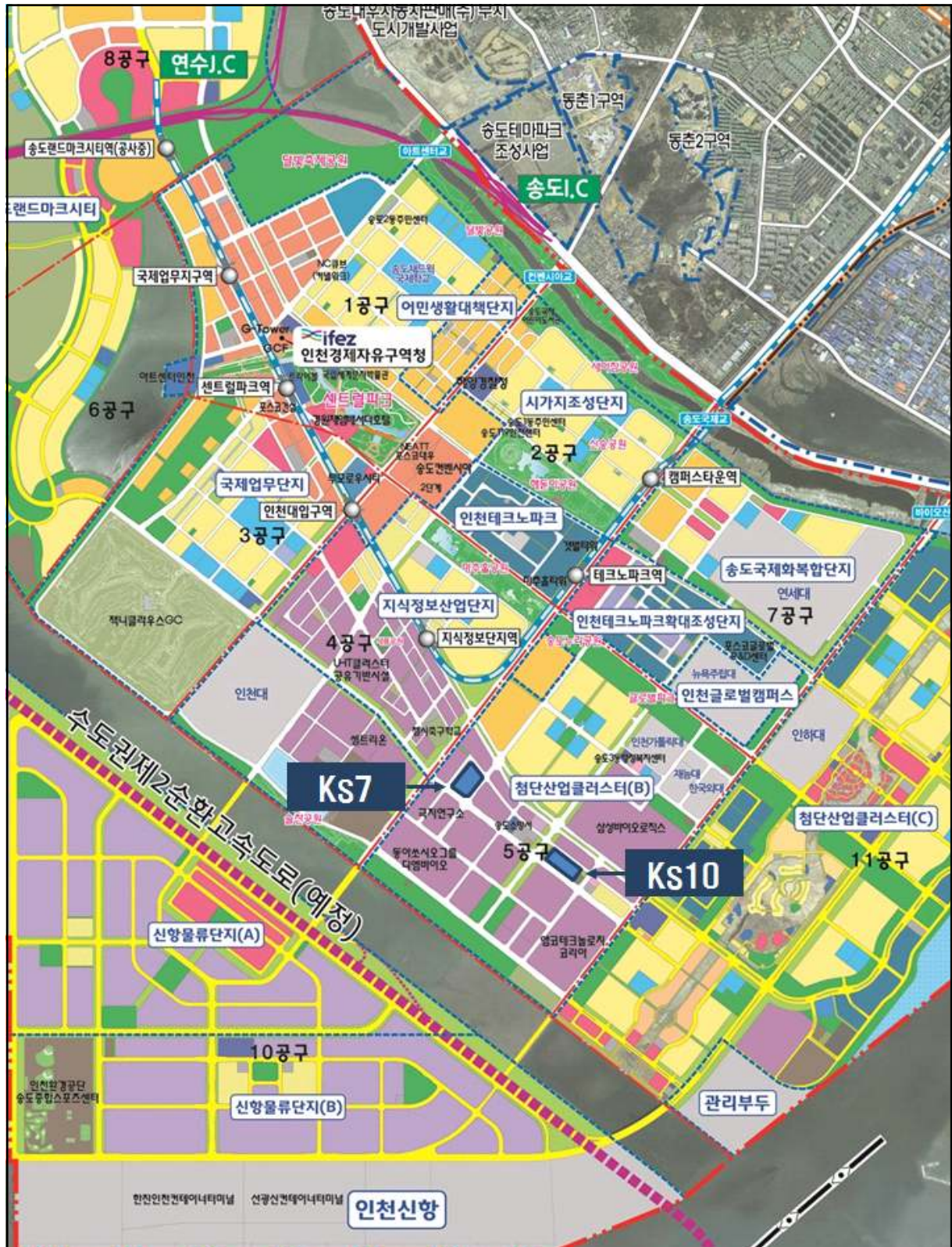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도



2. 공급대상용지 관련사항

2.1 위치도

1) 송도국제도시 내 공급대상 사업용지(Ks7, Ks10) 위치



2.2 용지현황

1) 금회 공급대상 사업용지 위치도



2) 금회 공급대상 부지현황(6개 획지, 54,297.5㎡)

공급획지		면 적		비 고
		㎡	3.3㎡	
Ks7		28,722.4	8,688.5	◦ 단일 획지로 매각
Ks10 (5개 획지)	(가)	6,017.3	1,820.2	
	(나)	9,633.4	2,914.1	
	(다)	5,108.3	1,545.3	
	(라)	2,190.6	662.7	
	(마)	2,625.5	794.2	
	소계	25,575.1	7,736.5	
합 계		54,297.5	16,425.0	※ 분할측량 예정으로 면적변동 가능

3) 부지가격: 조성원가(80%) + 감정평가(20%)

※ 조성원가: 747,568원/㎡(약 247만원/3.3㎡)

※ 감정평가: 공급대상자 선정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청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획지별로 평가 예정

2.3 건축물계획 관련사항

1)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정

공급획지	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
Ks7	28,722.4	준주거	50%이하	350%이하	80m이하
Ks10	25,575.1				
합 계	54,297.5				

2) 건축물 용도(변경예정)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참고

구분	허용용도
Ks7	- 주용도: 건축연면적의(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Ks10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 (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 업종의 공장(도시형 공장)에 한함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Ks10 부지의 공장용도: 국내기업의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제 적용 및 배정면적에 따라 허용가능 여부나 면적 등 변경 가능성 있음.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투기업은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3) 기타사항에 대한 운용규정

- 가. 본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규정 또는 해당법규나 관련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조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한다.
- 나. 모집공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을 따르도록 한다.

2.4 유치대상 업종

- 1) 입주가능 업종은 입주업종 제한을 최소화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유치업종인 다음의 <유치업종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 2) 획지별로 허용된 건축물 용도 중 연구소는 유치업종의 관련시설로 건축되어야 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유치업종 목록>

유치업종	업종분류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	14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
인쇄 및 기록물매체 복제업	18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 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업	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
방송업	60
통신업(유선, 무선, 기타 전기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무지원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85
보건업	86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수리업	95
기타 서비스업	96
국제 및 외국기관	99

3. 용지공급 절차와 조건

3.1 용어의 정리

- 1) 신청자: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 2) 공급대상자: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이하 “경제청”)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 사업자: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4) 본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소 건립사업을 말한다.
- 5) 착공일: 본사업을 위한 공사 착공신고일을 말한다.
- 6) 준공일: 본사업을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3.2 일반사항

- 1) 이 사업용지 공급과 관련한 제반업무는 “경제청”에서 시행한다.
- 2) “경제청”은 별도 구성하는 입주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후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신청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 및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용지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4) 신청자는 관계법령, 모집공고문, 공급지침서,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명시한 사항, 기타 용지매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용지매입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경제청”은 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공급을 신청하였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신청자격 제한 및 신청방법
 - 가. 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 나. 신청자는 금회에 1획지에 한하여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 다. 신청자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주체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 라. 신청자는 유치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사업계획서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할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 마. 신청자가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용지공급지침서상의 유치업종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은 입주하여 영위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계획 업종의 경우 유치업종에 부합하더라도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취득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바. 신청자는 대기, 수질 등 환경관련법 및 관련 제반규정상 적합한 입주시설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입주시설로 판명시 입주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경제청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접수에 한해 인정한다.(우편접수 불가)
- 아. 제출한 신청서류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3 공급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장 소
모집공고	2019.02.21.(목)	인천시(경제청) 홈페이지, 일간지
신청서 접수	2019.03.28.(목)	경제청 신성장산업유치과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 타워 27층)
입주심의	2019.04.	경제청(입주심의위원회)
공급대상자 발표	2019.04.30.(화)	개별통보
토지매매계약 체결	2019.05.24.(금)	경제청 기획정책과(용지분양팀)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3.4 공급조건

- 1) (지정용도 사용의무) 사업자는 목적용지의 매수를 위해 입주심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2) (개발기한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최대 6개월까지)에 한하여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
- 3) (재산의 담보제공 및 처분제한) 본사업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목적용지 또는 목적시설 등을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 및 제3자에게 매각을 금지한다. 단, 준공일 이후에는 목적용지 또는 목적시설 등을 본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 담보로 제공이 가능하다.
- 4) (소유권이전 이후의 의무이행 담보) 의무사항 위반 등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자가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환매특약 및 환매등기 설정)

3.5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 1) 획지별로 입주기업 심의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도 구성하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한 후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심의과정 및 그 내용은 비공개한다.

2)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가. 평가점수: 기업평가(정량) 40점+사업계획평가(정성) 60점+가점 10점

- 기업 평가 : 기업규모, 재무안정성, 연구능력, 기술능력
- 사업계획 평가: 자원확보계획, 시설계획, R&D운영계획
- 가점: 인천시 기여방안(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 및 지역산업에 파급력이 큰 기술보유, 동반성장 관련 계획)

나. 적격업체 선정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신청자

3) 입주심의위원회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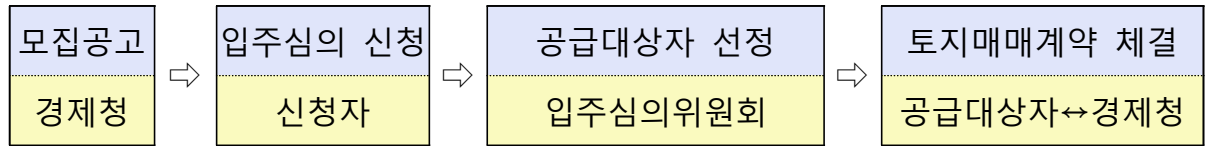
가. 입주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

수의 평균을 신청자의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하되 위원별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하며, 최종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나. 평가기준은 [별첨 1 : 세부평가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 토지의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합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평가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진행된다. 단, 심의절차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별도 통보에 따라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요약하여 프리젠테이션(동영상 및 나레이션 금지)을 진행 하여야 한다. 이 때 프리젠테이션 내용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과 동일하여야 하며 일정 및 발표시간 등은 추후 통보한다.
- 라. ‘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서 제시한 특정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0” 점으로 처리 한다.
- 마. 입주심의위원회의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평가관련 자료(사업계획서 포함) 등은 일체 비공개하며 공급대상자는 개별 통보한다.
- 4) 획지별로 적격자 중 최고득점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R&D 운영계획, 자원확보계획, 시설계획 순으로 고득점자 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획지별로 선정된 자가 토지매매계약 체결 포기 시 해당획지 적격업체에 한해 차순위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5) 신청자가 1개인 획지의 경우에도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입주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과정에서 용지공급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공급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6) 공급대상자 제외 및 부적격 처리
 - 가. 입주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신청자가 입주심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질의 사항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허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의 안전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신청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7) 토지매매계약 체결 절차



※ 총괄 절차도

구분	절차	담당부서
계약 단계	모집공고	신성장산업유치과
	사업계획심사(입주심의위원회)	신성장산업유치과
	토지매매계약	기획정책과
↓		
인·허가 단계	경관심의 (연면적 5,000㎡ 이상)	도시디자인단
	건축허가	도시건축과
↓		
공사 단계	착공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도시건축과
	준공 (착공 후 2년 이내)	도시건축과

3.6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1) 계약의 체결

- 가. 공급대상자는 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본절 “3.6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에 기재된 주요내용 및 조건으로 “경제청”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경제청”과 협의에 의해 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제청”은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점 신청자와 협상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향후 “경제청”과의 다른 계약이나 공모,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지정용도의 사용

사업자는 “모집공고” 및 “공급지침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목적 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경제청”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상에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 가. 매매대금은 원화로 지급한다.
- 나. 매매대금은 일시납으로 계약금(10%)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 하고 중도금(40%)은 계약체결 후 3개월내, 잔금(50%)은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업자가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① 1년간 3개월 단위(4회)로 균등분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한다.
 - ③ 할부이자는 할부대금 납부 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 매매대금 납부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착공 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함.

4) 연체요율 및 변제충당순서

- 가.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 15%를 적용한다.

- 나. 대금의 변제충당순서는 1)소정의 위약금 또는 변상금, 2)지연손해금, 3)분납이자, 4)분납잔금의 순에 의한다.

5) 개발기한의 준수

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용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의 건립을 위하여 공사착공을 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 ※ 착공 또는 준공이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사유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6) 면적기준 및 정산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7)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사업자는 목적용지상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에 대하여 “경제청” 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8) 목적용지의 사용승락

- 가. “경제청” 은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목적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 나. 사업자가 매매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목적용지의 사용승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체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경제청”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신청용도의 토지 사용 승낙을 신청할 수 있다.

9) 미납잔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사업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신청하거나 토지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잔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인의무

- 가. 사업자는 목적용지상의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 포함),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매매대금의 감액이나 지급지연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책임을 “경제청”에 물을 수 없다.

- 나. 사업자는 관련조례에 의거 건축허가 조건으로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 투입구 설치 및 쓰레기 이송관로 연장 설치” *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문의처: 연수구 자원순환과 (☎032-749-7872)

11) 재산의 처분금지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목적용지 또는 목적시설 등을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준공일 이후에는 목적용지 또는 목적시설 등을 본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 담보로 제공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경제청”에게 이전하고 목적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12) 매매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제청”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경제청”으로 귀소하며, 반환금액은 원금만 보장한다.

- 가. 사업자가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지정용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다. 사업자가 준공일 전에 목적 용지를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라. 사업자가 개발착수기한 또는 개발 준공기한 이내에 착공 또는 준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사업자가 본사업의 사업계획상 주용도 연면적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 바. 사업자가 매매대금을 3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사. 사업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목적용지를 무단사용한 때

- 아. 사업자가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전에 “경제청”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기타 처분하였을 때
- 자. 관계규정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때

13) 협의에 의한 계약해제(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 상호협의를 의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현저하게 증감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
- 나. 인·허가 결과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민간투자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
- 다. 기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 소유권 이전

“경제청”은 사업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한다.

15) 소유권 이전 이후의 의무이행 담보

- 가. “경제청”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경제청”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그 각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
- 나. “경제청”이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자는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경제청”에게 이전하고 목적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 다. “경제청”은 환매특약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환매하는 경우 환매대금에서 사업자가 “경제청”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16) 기한의 이익상실

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신청

되었거나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경제청”은 사업자로 하여금 미납잔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7) 조세·공과금의 부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사업자에 대한 목적용지의 사용승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가 부담한다.

18) 등기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환매권 설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9) 통지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사업자의 대표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경제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해석

상호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 모집공고, 공급지침의 순서대로 우선한다.

4.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4.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 1) 사업계획서는 [별첨 5]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거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필요시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 2)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계획서 심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3) 신청자는 제출의무서류가 아니더라도 “경제청”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제 실행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5)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표지에 신청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6)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신청자의 인감은 반드시 [별첨 2]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감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7)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 사업계획서 제출

- 1) 사업계획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총 10부(원본 1부 및 사본 9부)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영문원본 1부와 국문 번역본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경제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원가 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4) 평가를 위해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경제청”에 귀속된다.
-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6)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전산화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7)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행정기관의 처분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청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8) 사업계획서 첨부서류(1부 제출)

- 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에 한하며 ‘제조원가 명세서’ 포함) 1부
- 나. ISO인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한국제품인정제도(KAS), 녹색인증, 이노비즈기업, 우수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하며 최대 2개 인정)
- 다. 연구개발 인력현황 인정서 또는 신고서 사본 1부
- 라. 특허서류 사본 1부
- 마. 타인자본조달 증빙서류 1부

4.3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세부지침

- 1) 사업계획서는 A4 용지크기로 제출하고 100페이지 이내로 매수를 제한한다. 단, 표지, 평가항목 반영사항,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 및 쪽번호 부여에서 제외하고, 부속서류 중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 2)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 단면에 한글(HWP)이나 MS-WORD 또는 엑셀을 사용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표기한다.
- 3) 사업계획서의 모든 면은 일련번호로 쪽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종좌철 형태(책자식, 스프링 제본 금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 4) 금액산출기준은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에 의거 원화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한다. (결산서나 감사보고서는 제외)
- 5)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하여야 한다.
- 6) 외국기업(외국인 포함)은 모든 근거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 문서는 한글 번역본을 공인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모든 문서의 해석 및 평가는 한글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 7) 본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공모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 및 “경제청”에서 배부하는 공모지침서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 8)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지침서의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경제청”의 홈페이지에서만 공고한다.

[별첨 1]

세부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업평가 (정량평가)	기업규모	- 매출액	5	* 2017년도 재무제표 기준
	재무안정성	- 부채비율 - 영업이익율 -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	
	연구능력	- 연구인력수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 연구개발비 규모	15	* 신고서 또는 인증서 * 2017년도 재무제표 기준
	기술능력	- ISO인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한국제품인정제도(KAS), 녹색인증, 이노비즈기업, 우수중소기업 - 특허·실용신안(건수)	5	* ISO~우수중소기업 인증은 중복하여 최대 2개에 한해 1점까지 인정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확인
	소 계		40	
사업계획 평가 (정성평가)	재원확보계획	-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 재원조달계획	30	* 사업계획서 * 입주업종 부적합 시 점수에 관계없이 부적격처리
	시설계획	- 용도별 공간계획 - 주차장계획 - 친환경 계획	10	
	R&D운영계획	- R&D역량(연구개발비 및 인력현황 등) - 기술의 상용화 계획 - 고용 및 신규인력 계획	20	
	소 계		60	
가 점	인천시 기여방안	-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 및 지역산업에 파급력이 큰 기술 보유 - 동반성장 관련 계획	10	
합 계			110	

※ 입주심의를 위한 증빙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별첨 2]

접수번호		2	0	1	9	-				
-첨단산업클러스터(B) 연구소 건립-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T : , F :)							
기 존 사 업	소재지	공 장	(T : , F :)							
		연 구 소	(T : , F :)							
	입주형태		(분양) (임차) (기타 :)							
	기존업종		분류번호		업 종		생산제품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연구시설면적(㎡)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		
신 청 내 용	신청토지 (해당사항에 ○표)		○ 획지번호: Ks7, Ks10(가, , ,) (면적 : ㎡)							
	신청업종		분류번호		업 종		연구 분야			
	건축계획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연구시설면적(㎡)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연구소 건립을 위해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소정양식) 1부 2. 기업현황 요약서(소정양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필요시) 사본 1부 6. 제출자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1부 7. 사업계획서(공통) 10부								

[별첨 3] 서약서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용지공급지침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대상자 선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해 제출한다.
2. 본 신청자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3. 본 신청자는 용지공급 지침서에 제시된 건축물 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한 부용도 비율(20% 이하)에 대해 토지가 산정 시 감정평가 금액이 적용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신청자는 용지공급지침서 상 건축물 용도에 따라 해당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상의 건축물 허용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 신청자는 준공일 전에 목적용지를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본 신청자는 관련조례에 의거 건축허가 조건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투입구 설치 및 쓰레기 이송관로 연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9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첨 4] 기업현황 요약서 (기업명:)

구분	항목		확인서류
기업규모	매출액		억원 2017년도 재무제표
재무안정성	부채비율 ¹⁾		% 2017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률 ²⁾		% 2017년도 재무제표
	현금및현금성자산		억원 2017년도 재무제표
연구능력	연구인력수 ³⁾		명 신고서 또는 인증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⁴⁾		% 2017년도 재무제표
	연구개발비 규모		억원 2017년도 재무제표
기술능력	기술인증	ISO 인증	공고일 이전 등록된 유효기간 내 증서 사본 ※ 해당항목에 O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우수재활용제품(GR)	
		한국제품인정제도(KAS)	
		녹색인증	
		이노비즈기업	
		우수중소기업	
	특허보유 현황	특허, 실용신안	개 증서 사본

1) 타인자본(부채총계)/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 2) 영업이익/매출액 × 100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신고 또는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인력

4) 세부 산정방법: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합계(①+②+③+④) / 매출액 × 100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

- 당해연도개발비 총 증가금액 =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③ 제조원가명세서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가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별첨 5]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2019. 02.

[회사명:]

대표자:

인

- 목 차 -

I . 회사의 개요	
II . 영업에 관한 사항	
III . 기술 분석	
IV . 재무 현황	
V . 재원확보계획	
VI . 건축 및 시설 계획	
VII . R&D 운영 계획	
VIII . 인천시 기여방안	

※ 지면에 구매 받지 말고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되, 기타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일반내용

구 분	적 요	비 고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본사주소		
주요계열사		
납입 자본금		
주요 사업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		
종업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2018년12월말 이후)
홈페이지		
전화번호		

2. 회사의 주요 연혁 및 업력

◆
◆
◆
◆
◆

3. 대표자 및 경영진의 경력

◆
◆
◆
◆
◆

4. 이사회 현황

직 위	성 명	담당분야

5. 주요 주주 현황

성 명	지분율	비 고

II. 영업에 관한 사항

1. 주요 생산 제품 및 제품의 특성 등

2. 제품별 판매비중 및 판매처

3. 국내 및 해외 수요(시장) 전망

4. 경쟁사 현황

Ⅲ. 기술 분석

1. 기술정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 경쟁력(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 개발계획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ISO인증, 신기술인증(NT), 신제품인증(NEP), 우수재활용제품(GR), 한국제품인정제도(KAS), 녹색인증, 이노비즈기업, 우수중소기업 등 제품·기술 인증 보유
- 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

IV. 재무현황(과거 3개년도) - 원본은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감사필 재무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반기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기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구 분	년	년	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총 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 부채			
자본금			
잉여금			
총 자본			

2.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손익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세 전 이 익			
법 인 세			
당기순이익			

3. 요약 현금흐름표

(단위 : 원)

구 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4. 기타 회사 현황

(당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재원확보계획

1. 사업개요

(연구소 이전여부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특히 자체 재원조달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향후 안정적 운영 방안을 기재 바람)

2. 총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구 분	금 액(억원)	비율(%)	년	년	년	비 고
1. 토지매입 비용						
2. 설계비						
3. 공사비						
4. 부대비						
5. 제세공과금						
6. 예비비(a)						
계(b)						
예비비율(a/b)						

* 구분의 각 항목은 기업상황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3. 재원조달 계획

구 분	금액(억원)	비율(%)	년	년	년	비 고
1. 자기자본						
1) 내부유보자금						
2) 증자						
3) 자산매각						
4) 기타						
2. 타인자본						
1) 회사채 발행						
2) 금융기관차입						
3) 기타						
계						

* 구분의 각 항목은 기업상황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 타인자본조달은 타인자본조달액의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
확약(의향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VI. 시설계획

1.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기본계획

1) 건축규모

용지면적(a)	건축면적(b)	연면적(c)*	건폐율(b/a)	용적률(c/a)
m ²	m ²	m ²	%	%

* 용적률 산정 시 지상연면적

2) 연구면적비율

연구소(a)	업무시설(b)	기타(c)	합계 (a+b+c)	연구소 비율(%) a/(a+b+c)
m ²	m ²	m ²	m ²	%

3) 층별면적 ※ 시설명: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구 분	연구소		업무시설		기 타		합계(m ²) (층별 면적)
	면적(m ²)	시설명	면적(m ²)	시설명	면적(m ²)	시설명	
:							
3층							
2층							
1층							
지하1층							
:							
합계(m ²) (용도별 면적)		—		—		—	

4) 층별 배치도

:	
3층	
2층	
1층	
지하	
:	

2. 주차장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최종 근무예정인원(명)		
주차장 형태		· 자주식주차장: 지하식 · 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 · 기계식주차장: 지하식 · 건축물식
주차대수		
법정 주차대수		
주차대수/법정주차대수(%)		

3. 친환경 계획 ※ 작성요령 : 설계, 자재, 설비 등 친환경과 관련된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4. 시설 현황

1.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 및 장비명	용량 및 규격 (HP・kW・m³)	수량	사용용도

2. 배출시설 명세

시설 및 장비명	용량 및 규격 (HP・kW・m³)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종 수 질 ()종 소음・진동(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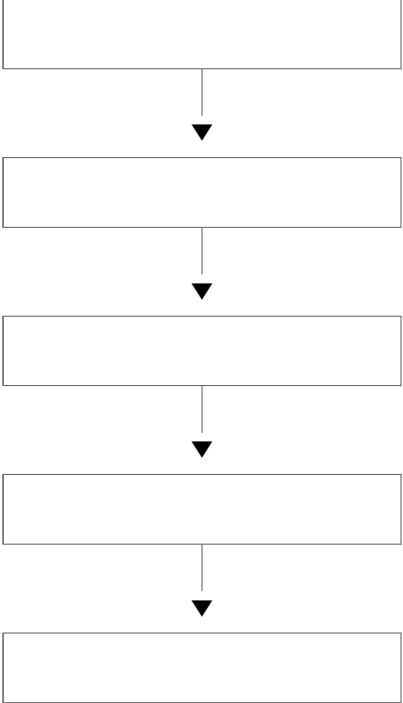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 본 연구소 용지 중 Ks10에서 허용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한하며 공해 발생정도가 허용한도 초과 시 입주심의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kW/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m³/일)	기타 (톤/일)

4. 생산공정도 해설(공장설립 해당기업만 작성)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VII. R&D 운영계획

1. R&D 역량

1) 연구개발비 및 인력현황 등 현황(최근 3개년)

연도	매출액 (억원)	연구개발 비용(억원)	연구개발 비율(%)	종업원수 (명)	연구개발 인력(명)	연구개발 인력비율(%)	연구실적 (특허, 인증 등)	기업부설 연구소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	-

2)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상용화 능력

3)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사의 성공요인(자유기술)

2. 기술의 상용화 계획 (서식변경 후 구체적으로 기재 가능)

사업내용	
연구개발 진행도	사업내용 요약설명
▼ ▼ ▼ ▼	

1) 연구개발에 따른 제품개발 계획 소개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구분	연도	개발명	금액(백만원)	연구비 재원조달방안 (국비지원 등)
실적				
계획				

※ 연구비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관련증빙자료 첨부

2) 개발제품의 상품화 계획 및 예상되는 시장의 종류와 규모 등 제시

3) 상용화 관련 시장진출 전략 등(자유기술)

3. 고용 및 신규인력 계획

1) 고용인력 현황 및 계획 ※ (): 신규 인력수

구 분	연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위치						송도 신사옥
연구인력수(명)			()	()	()	()	()
전체인력수(명)			()	()	()	()	()
연구인력비율(%)							

* 제출한 신고서(인정서) 연구개발 인력현황의 인력수와 일치하여야 함

2) 고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3) 연구개발 인력현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연구전담요원(명)						
연구보조원(명)						
연구관리직원(명)						
계(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신고 또는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인력

※ 제출한 신고서(인정서) 연구개발 인력현황의 인력수와 일치하여야 함

VIII. 인천시 기여방안

1.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 및 지역산업에 파급력이 큰 기술 보유
2. 동반성장 관련 계획